

## 접 수 증 (시험)

접수번호		접수일				
회사명		대표자/사업자번호	/			
성적서상호		신청인/전화	/			
성적서주소						
의뢰대상						
NO	품명	시험내용	수수료	완료예정일	수량	비고
합계						

신청	국가표준기본법 제 2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.		접수 방법	방문 (        )	
	신청인 (서명)			팩스 (        )	
				전화 (        )	
접수	상기 품목을 정히 접수합니다.		시료 확인	입고 (        )	
	대운계기산업(주) 담당자			현장 (        )	
검토 사항	시험방법	자체시험표준(        ), 기타제시방법(        )		확인	기술책임자
	시험위탁	미실시(        ), 위탁기관(        )			
참고 사항					

**<안내>**

- 당사의 명백한 잘못과 시험결과와 취급·부주의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고객은 당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- 성적서(인증서) 및 시험품을 인수하러 오시기 전에 먼저 완료여부를 확인(기술부 시험팀)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서류 및 기타 보안사항이 발생시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- 성적서상의 업체정보는 시험이 완료되기전까지 수정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접수증을 확인 하시기 바라며 변경요청은 전화를 주신 후 Fax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- 수수료는 추가시험(EMC 시험 등) 등으로 인해 완료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